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
----------	-------

발의년월일 : 2013. 8. 26.

발 의 자 : 김수진·강성국·김순금
서종수·오진아·유동균
이필레·장영숙·조남진
의원(9명)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라.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3. 제정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 제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가. 소요예산 : 1,855천원(2014년 예산에 편성예정)

나. 산출기준 : 협의회 참석수당 $70,000\text{원} \times 16\text{명} \times 2\text{회} \times 80\% = 1,792\text{천원}$

유공자 표창 및 위촉장 구매 $4,500\text{원} \times 14\text{매} = 63\text{천원}$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8. 27 ~ 9. 1(제출된 의견 없음)

나.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 과장
4. 서울마포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 과장
5.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7.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종사자
8. 판사·검사·변호사
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정신보건 전문가 또는 의사
11.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년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